

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78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. 6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조례 중 금융기관을 정의하기 위해 인용한 「은행법」제2조제1항2호의 “은행” 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금융기관과 불일치하므로, 조문 개정
- 조례에서 사용한 기관명·규칙명 등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어 현행에 맞는 명칭으로 정비

주요내용

- “금융기관” 의 정의 개정(안 제2조제2호)
- 「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」의 명칭 정비(안 제5조제3호)
- 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규칙명 정비(안 제21조제2항)
- 지식·정보산업의 업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 정비(별표)

개 정 조 례 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 산 수 반 사 항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1. 11. 23. ~ 2021. 12. 13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붙임 1 >

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금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

나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
다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
라.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”를 “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기업지원과
안 산 시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과장 김 운 학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팀장 김 은 숙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한 영 아 (행정 2841)

<별 표>

지식·정보산업(제2조 관련)

한국표준 산업분류	업 종 명	비 고
582	소프트웨어자문, 개발 및 공급업	
5911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
62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
63991	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	
732	전문디자인업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“금융기관”이란 「은행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.</u>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제3조(기금설치 및 조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삭제</p> <p>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경기도 및 <u>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 출연금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“금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</u></p> <p>가. <u>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</u></p> <p>나. <u>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</u></p> <p>다. <u>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</u></p> <p>라. <u>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</u>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기금설치 및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시</u> -----</p>

2. 삭 제

3.·4. (생 략)

제5조(용자대상업체) 기금의 용자대상 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.

1. (생 략)

2. 삭 제

3.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

4. ~ 8. (생 략)

제21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(생 략)
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<별 표>

지식·정보산업(제2조 관련)

한국표준 산업분류	업 종 명	비고
<u>72100</u>	<u>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</u>	
<u>72209</u>	<u>기타 소프트웨어자문, 개발 및 공급업</u>	
<u>72400</u>	<u>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</u>	
<u>74602</u>	<u>제품 디자인업</u>	
<u>74603</u>	<u>시각 디자인업</u>	
<u>74609</u>	<u>기타 전문디자인업</u>	
<u>87111</u>	<u>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</u>	
<u>87112</u>	<u>만화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</u>	
<u>87113</u>	<u>광고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</u>	

3.·4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용자대상업체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3.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-----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 「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.

<별 표>

지식·정보산업(제2조 관련)

한국표준 산업분류	업 종 명	비고
<u>582</u>	<u>소프트웨어자문, 개발 및 공급업</u>	
<u>5911</u>	<u>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</u>	
<u>62</u>	<u>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</u>	
<u>63991</u>	<u>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</u>	
<u>732</u>	<u>전문디자인업</u>	